# 「교내학술연구비 세칙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0. 12. 21. 개정 판 (시행 2020. 4. 1.) → 2020. 3. 19. 개정 판 (시행 2020. 4. 1.)

바뀜 1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180/compare?from=1046&to=967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6:18:06 · 밑줄은 바뀐 부분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**제5조(지원분야 및 지원액)**<br>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.<br>구분<br>종류<br>인문사회<br>이공계<br>예체능<br>비 고<br>연<br>구<br>비<br>정책연구 과제<br>.1개 과제 최고 1,000만원을 넘지 못함 (총예산 3,000 만원 이하)<br>.보고서제출원칙<br>교내공모 과제<br>A & HCI,<br>SSCI<br>(1,000만원)<br>KCI등재(후보제외),Scopus<br>(500만원)〈개정 2018-01-17〉<br>SCI, SCIE<br>IF 1.0이상<br>(1,000만원)<br>KCI등재(후보제외)(500만원)〈개정 2016-03-01〉<br>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. 공연, 전시,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<br>.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.책임연구자 조건: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(시행: 2012년 과제부터 적용)<br>.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(2012.3.1부)<br>〈개정 2018-01-17〉<br>.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(수정확인자료, 게재예정증명서),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<br>.〈삭제 2020-12-21〉<br>.정산원칙(당해학년도 증빙서)<br>.반드시 법인카드사용(개인카드정산 불가)<br>〈삭제〉〈개정 2016-03-01〉<br>. 〈삭제 2020-12-21〉 | **제5조(지원분야 및 지원액)**<br>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.<br>구분<br>종류<br>인문사회<br>이공계<br>예체능<br>비 고<br>연<br>구<br>비<br>정책연구 과제<br>.1개 과제 최고 1,000만원을 넘지 못함 (총예산 3,000 만원 이하)<br>.보고서제출원칙<br>교내공모 과제<br>A & HCI,<br>SSCI<br>(1,000만원)<br>KCI등재(후보제외),Scopus<br>(500만원)〈개정 2018-01-17〉<br>SCI, SCIE<br>IF 1.0이상<br>(1,000만원)<br>KCI등재(후보제외)〈개정 2016-03-01〉<br>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. 공연, 전시,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<br>.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.책임연구자 조건: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(시행: 2012년 과제부터 적용)<br>.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(2012.3.1부)<br>〈개정 2018-01-17〉<br>.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(수정확인자료, 게재예정증명서),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<br>.간접비 5% 징수<br>.정산원칙(당해학년도 증빙서)<br>.반드시 법인카드사용(개인카드정산 불가)<br>〈삭제〉〈개정 2016-03-01〉<br>.게재료와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 별도 지원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(논문)〈개정 2016-03-01〉<br>- KCI 등재후보 150만원×0.7*(2/N+2 or 1/N+2)<br>- KCI 등재 150만원×1*(2/N+2 or 1/N+2)<br>- Scopus 150만원×1.2*(2/N+2 or 1/N+2)<br>- WoS 상위 Q3(75%),Q4(100%)이내 200만원×2*(2/N+2 or 1/N+2)<br>- WoS 상위 Q2(50%)이내 200만원×2.5*(2/N+2 or 1/N+2)<br>- WoS 상위 Q1(25%)이내 200만원×3*(2/N+2 or 1/N+2)<br>- SSCI, A&HCI 200만원×3*(2/N+2 or 1/N+2)<br>- 지원한도<br>KCI 최대 150만원<br>Scopus 최대 150만원<br>WOS 최대 300만원<br>SSCI, A&HCI 최대 300만원<br>- 상위 5%이내 논문 책임저자 100만원<br>추가지원(국제전문한함)<br>- 상위 10%이내 논문 책임저자 50만원<br>추가지원(국제전문한함)〈개정 2020-03-19〉<br><논문 지원 기준><br>지원비 3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: 당해학년도<br>외부용역공모과제 신청자(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)〈개정 2017-01-24〉<br>·10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: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과제 진행(수행기간이 거쳐 있는 경우. 단,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)〈개정 2017-01-24〉<br>.중복지원허용(단,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)<br>.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<br>.〈삭제〉〈개정 2016-03-01〉<br>.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(시행일: 2014.3.1.부-발행일 기준)<br>.단독은1(100%)로 계산 〈개정 2016-03-01〉<br>.공동: 1/(n + 2) 〈개정 2016-03-01〉<br>.〈삭제〉 〈개정 2017-01-24〉<br>.책임(제1저자 또는 교신): 2/(n + 2),(단,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. 교신저자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는1/n+2) (시행일: 2015.3.1.부 - 발행일 기준)<br>.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=15로 처리 〈개정 2016-03-01〉<br>.〈삭제 2020-12-21〉<br>.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(단, 국제일반은 가중치 0.1 계산)〈개정 2020-03-19〉<br>. 〈삭제 2020-12-21〉<br>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<br>〈개정 2017-01-24〉 |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(논문)〈개정 2016-03-01〉<br>- KCI 등재후보 150만원×0.7*(2/N+2 or 1/N+2)<br>- KCI 등재 150만원×1*(2/N+2 or 1/N+2)<br>- Scopus 150만원×1.2*(2/N+2 or 1/N+2)<br>- WoS 상위 Q3(75%),Q4(100%)이내 200만원×2*(2/N+2 or 1/N+2)<br>- WoS 상위 Q2(50%)이내 200만원×2.5*(2/N+2 or 1/N+2)<br>- WoS 상위 Q1(25%)이내 200만원×3*(2/N+2 or 1/N+2)<br>- SSCI, A&HCI 200만원×3*(2/N+2 or 1/N+2)<br>- 지원한도<br>KCI 최대 150만원<br>Scopus 최대 150만원<br>WOS 최대 300만원<br>SSCI, A&HCI 최대 300만원<br>- 상위 5%이내 논문 책임저자 100만원<br>추가지원(국제전문한함)<br>- 상위 10%이내 논문 책임저자 50만원<br>추가지원(국제전문한함)〈개정 2020-03-19〉<br><논문 지원 기준><br>지원비 3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: 당해학년도<br>외부용역공모과제 신청자(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)〈개정 2017-01-24〉<br>·10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: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과제 진행(수행기간이 거쳐 있는 경우. 단,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)〈개정 2017-01-24〉<br>.중복지원허용(단,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)<br>.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<br>.〈삭제〉〈개정 2016-03-01〉<br>.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(시행일: 2014.3.1.부-발행일 기준)<br>.단독은1(100%)로 계산 〈개정 2016-03-01〉<br>.공동: 1/(n + 2) 〈개정 2016-03-01〉<br>.〈삭제〉 〈개정 2017-01-24〉<br>.책임(제1저자 또는 교신): 2/(n + 2),(단,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. 교신저자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는1/n+2) (시행일: 2015.3.1.부 - 발행일 기준)<br>.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=15로 처리 〈개정 2016-03-01〉<br>.SCI, SCIE 논문 중 IF 3.0이상이면서 본교 교원이 교신저자인 경우(1인에 한하여) 저자수가 4인 이상 다수라 할지라도 n=4로 인정함(SSCI, A&HCI 동일적용) 〈개정 2016-03-01〉<br>.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(단, 국제일반은 가중치 0.1 계산)〈개정 2020-03-19〉<br>.IF는 최근 피인용지수를 의미하고,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함. 단 WoS와 KCI는 IF(지난 2년간 출간된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추후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처리함(대학정보공시 기한)〈개정 2020-03-19〉<br>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(논문) 추가인센티브 〈개정 2016-03-01〉<br>기간은 학년도 기준, 연구비는 교내 연구지원비 지원기준으로함.〈개정 2020-12-21〉<br>〈개정 2016-03-01〉〈개정 2020-03-19〉<br>〈개정 2016-03-01〉<br>. 당해연도 논문실적 100%이상자 중 지난 3년대비 2배이상 상승한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(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)<br>〈개정 2020-03-19〉<br>〈개정 2016-03-01〉<br>. 〈삭제 2020-12-21〉<br>〈개정 2020-12-21〉<br>저·역서 지원비〈개정 2016-03-01〉<br>저·역서(10~30만원)<br>〈개정 2016-03-01〉<br><저역서 지원 기준><br>삭제〈개정 2018-01-17〉<br>- 공모형태로 1인당 1편, 최대 5인에게 지원<br>- 기타 저서 인센티브는 10만원 ~ 50만원 지원〈개정 2018-03-01〉<br>페이지<br>인센티브<br>비고<br>300페이지 이상<br>50만원<br>1/n, 최하 5만원(만원 단위)<br>200페이지 이상<br>30만원<br>1/n, 최하 5만원(만원 단위)<br>100페이지 이상<br>20만원<br>1/n, 최하 5만원(만원 단위)<br>100페이지 미만<br>10만원<br>1/n, 최하 5만원(만원 단위)<br>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<br>.Nature, Science, Cell 게재시 책임(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) 5000 만원, 공동저자 1000만원〈개정 2020-12-21〉<br>.기타 IF15이상 책임(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) 500만원, 공동 200만원<br>.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<br>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<br>〈삭제〉〈개정 2018-01-17〉<br>학술대회 논문발표<br>삭제<2018.01.17.) | 논문들의 1년 평균 피인용지수)를 적용하지만, SCOPUS는 CiteScore(지난 3년간 출간된 논문들의 1년 평균 피인용지수)로 공지되기 때문에 SiteScore를 적용함. 〈개정 2018-01-17〉<br>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<br>〈개정 2017-01-24〉<br>추후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처리함(대학정보공시 기한)〈개정 2020-03-19〉<br>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(논문) 추가인센티브 〈개정 2016-03-01〉<br>〈개정 2016-03-01〉<br>〈개정 2016-03-01〉<br>〈개정 2016-03-01〉<br>. 100%의 기준은 국내 등재(후보 포함)지 단독 1편의 경우이며, 기타 논문의 가중치는 아래 표와 같음.<br>논문지<br>가중치<br>비고<br>SSCI, A&HCI, SCI/SCIE(IF 1.0 이상)<br>2.0<br>SCI/SCIE (IF 1.0 미만), SCOPUS<br>1.5<br>등재(후보 포함)<br>1.0<br>등재(후보 포함) 단독 1편 기준<br>국제 일반<br>0.7<br>4개국 이상 주저자(제1저자, 교신)이어야 하며, 7편 이상 논문이 게재시 인정〈개정 2016-03-01〉<br>저·역서 지원비〈개정 2016-03-01〉<br>저·역서(10~30만원)<br>〈개정 2016-03-01〉<br><저역서 지원 기준><br>삭제〈개정 2018-01-17〉<br>- 공모형태로 1인당 1편, 최대 5인에게 지원<br>- 기타 저서 인센티브는 10만원 ~ 50만원 지원〈개정 2018-03-01〉<br>페이지<br>인센티브<br>비고<br>300페이지 이상<br>50만원<br>1/n, 최하 5만원(만원 단위)<br>200페이지 이상<br>30만원<br>1/n, 최하 5만원(만원 단위)<br>100페이지 이상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.〈삭제〉 〈개정 2016-03-01〉<br>외부 실험기기 사용료지원<br>100만원이내<br>.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,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(본 교 미구비기기)<br>.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<br>.〈삭제〉 〈개정 2016-03-01〉<br>논문게재료<br>(심사료포함)<br>지원<br>. 〈삭제 2020-12-21〉<br>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<br>.횟수 제한 없음<br>.게재시 심사료 지원<br><게재료 기준 개정:2020.03.19><br>- WoS 상위 Q1~Q2 및 SSCI, A&HCI 실비 120만원까지 지원<br>- WoS 상위 Q3~Q4 실비 80만원까지 지원<br>- KCI 등재(후보) 및 Scopus 실비 40만원까지 지원<br>.〈삭제〉 〈개정 2016-03-01〉<br>교<br>육<br>훈<br>련<br>비<br>연회비지원〈개정 2017-01-24〉<br>.학회발행 영수실비, 국내학술대회 참가비〈개정 2018-01-17〉<br>단,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〈개정 2019-02-25〉<br>.1인당 년 30만원 제한〈개정 2017-01-24〉<br>참가비지원<br>(국외)<br>.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(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)〈개정 2016-03-01〉<br>.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<br>.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%(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) 이상만 신청가능 ∑(IF 가중치×논문실적) (체제비 및 실비, 횟수 연1회 제한)〈개정 2017-01-24〉<br>단,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.〈개정 2019-02-25〉<br>기<br>타<br>국제학술<br>대회유치<br>.발표자가 3개국 이상<br>.등재지(후보지 포함, 국내외 포함)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(시행일: 2013.9.1.부),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(시행일: 2013.9.1.부)<br>전국규모 | 20만원<br>1/n, 최하 5만원(만원 단위)<br>100페이지 미만<br>10만원<br>1/n, 최하 5만원(만원 단위)<br>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<br>.Nature, Science, Cell 게재시 책임(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) 3000 만원, 공동저자 500만원<br>.기타 IF15이상 책임(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) 500만원, 공동 200만원<br>.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<br>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<br>〈삭제〉 〈개정 2018-01-17〉<br>학술대회 논문발표<br>삭제<2018.01.17.)<br>.〈삭제〉 〈개정 2016-03-01〉<br>외부 실험기기 사용료지원<br>100만원이내<br>.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,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(본 교 미구비기기)<br>.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<br>.〈삭제〉 〈개정 2016-03-01〉<br>논문게재료<br>(심사료포함)<br>지원<br>.예능계(미술) 출품비의 경우 게재료 형식으로 지원<br>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<br>.횟수 제한 없음<br>.게재시 심사료 지원<br><게재료 기준 개정:2020.03.19><br>- WoS 상위 Q1~Q2 및 SSCI, A&HCI 실비 120만원까지 지원<br>- WoS 상위 Q3~Q4 실비 80만원까지 지원<br>- KCI 등재(후보) 및 Scopus 실비 40만원까지 지원<br>.〈삭제〉 〈개정 2016-03-01〉<br>교<br>육<br>훈<br>련<br>비<br>연회비지원〈개정 2017-01-24〉<br>.학회발행 영수실비, 국내학술대회 참가비〈개정 2018-01-17〉<br>단,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〈개정 2019-02-25〉<br>.1인당 년 30만원 제한〈개정 2017-01-24〉<br>참가비지원<br>(국외)<br>.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(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)〈개정 2016-03-01〉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학술대회유치<br>100만원 까지 지원(공모심사 후/ 3월, 7월) (시행일: 2013.9.1.부)〈개정 2017-01-24〉<br>.등재지(후보지 포함) 발행 학술단체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영어논문 교정비 지원<br>.협약된 업체 이용<br>.실비지원<br>.〈삭제〉 〈개정 2016-03-01〉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〈삭제 2020-12-21〉<br>〈삭제 2020-12-21〉<br>학부<br>구분<br>지원종류<br>지원금<br>전공분야<br>지급조건<br>비고<br>음악 분야<br>교내공모과제<br>국제전문급<br>1000만원<br>연주(피아노,성악,관현악,지휘)<br>독주/독창회, 오페라주역, 1인협연(국제음악제, 해외저명연주홀,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,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)<br>1.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2.작곡 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,녹음CD, 혹은 악보(작곡) 제출.〈개정 2020-12-21〉<br>3.자기전공원칙(최종학위 취득분야 /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)<br>4.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.<br>5.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(단,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,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),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.<br>6. 삭제<br>7.발표회 사전공지원칙: 관리기관(행정부서: 연구산학처)〈개정 2017-01-24〉〈개정 2020-12-21〉<br>8.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(행사성공연의한계 : 회사, 기관 등의 축하,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,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, 전문기획,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)<br>9.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모과제와 추가연구비를 총 200%/년 이내로 지원함. | .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<br>.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%(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) 이상만 신청가능 ∑(IF 가중치×논문실적) (체제비 및 실비, 횟수 연1회 제한)〈개정 2017-01-24〉<br>단,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.〈개정 2019-02-25〉<br>기<br>타<br>국제학술<br>대회유치<br>.발표자가 3개국 이상<br>.등재지(후보지 포함, 국내외 포함)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(시행일: 2013.9.1.부),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(시행일: 2013.9.1.부)<br>전국규모<br>학술대회유치<br>100만원 까지 지원(공모심사 후/ 3월, 7월) (시행일: 2013.9.1.부)〈개정 2017-01-24〉<br>.등재지(후보지 포함) 발행 학술단체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영어논문 교정비 지원<br>.협약된 업체 이용<br>.실비지원<br>.〈삭제〉 〈개정 2016-03-01〉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전문학술지연구지원비 추가인센티브<br>〈신설 2020-03-19〉<br>- Nature, Science, Cell 게재시 책임저자(5,000만원), 공동저자(1,000원) 지원<br>- 매 학년도 논문 300% 이상 달성시 100만원 추가 지원<br>- 당해년도 논문실적 100% 이상자 중 지난 3년대비 2배이상 상승한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(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)<br>학부<br>구분<br>지원종류<br>지원금<br>전공분야<br>지급조건<br>비고<br>음악 분야<br>교내공모과제<br>국제전문급<br>1000만원<br>연주(피아노,성악,관현악,지휘)<br>독주/독창회, 오페라주역, 1인협연(국제음악제, 해외저명연주홀,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,초청 및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10.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〈개정 2017-01-24〉<br>작곡<br>개인 작곡발표,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(국제음악제, 해외저명연주홀, 해외저명 연주단체, 창작음악단체의 위촉,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)<br>국내저명급(등재급)<br>500만원<br>연주(피아노,성악,관현악,지휘)<br>독주/독창회, 오페라주역, 1인협연(300석 이상, 국내전문공연장, 60분이상이며,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,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)<br>작곡<br>개인 작곡발표,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(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,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)<br>국내전문급(후보급)<br>300만원<br>연주(피아노,성악,관현악,지휘)<br>독주/독창회, 오페라주역, 1인협연(300석미만, 국내전문공연장, 60분이상,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,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)<br>작곡<br>개인 작곡발표,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(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,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)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체육 분야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미술디자인 분야<br>교내공모과제<br>국제전문급<br>1000<br>만원<br>디자인, 회화, 공예, 멀티미디어, 영상 등<br>저명 국제 비엔날레, 트리엔날레의 개인전(해외저명단체의 위촉,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)<br>1.자기전공원칙(최종학위 취득분야./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,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)<br>2.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3. 삭제<br>4. 저명 미술단체기준(사단법인, 저명, 대규모)<br>5.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| 공모에 의한것)<br>1.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2.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,녹음CD, 혹은 악보(작곡) 제출.<br>3.자기전공원칙(최종학위 취득분야 /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)<br>4.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.<br>5.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(단,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,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),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.<br>6. 삭제<br>7.발표회 사전공지원칙: 관리기관(행정부서: 연구처)〈개정 2017-01-24〉<br>8.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(행사성공연의한계 : 회사, 기관 등의 축하,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,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, 전문기획,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)<br>9.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모과제와 추가연구비를 총 200%/년 이내로 지원함.<br>10.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〈개정 2017-01-24〉<br>작곡<br>개인 작곡발표,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(국제음악제, 해외저명연주홀, 해외저명 연주단체, 창작음악단체의 위촉,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)<br>국내저명급(등재급)<br>500만원<br>연주(피아노,성악,관현악,지휘)<br>독주/독창회, 오페라주역, 1인협연(300석 이상, 국내전문공연장, 60분이상이며,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,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)<br>작곡<br>개인 작곡발표,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(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,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)<br>국내전문급(후보급)<br>300만원<br>연주(피아노,성악,관현악,지휘)<br>독주/독창회, 오페라주역, 1인협연(300석미만, 국내전문공연장, 60분이상,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,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)<br>작곡<br>개인 작곡발표,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(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,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)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이상(신작50%이상)<br>6.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<br>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.<br>7.발표회 사전공지원칙 : 관리기관(행정부서:연구진흥실)<br>8.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,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.<br>9.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10.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<br>국내저명급<br>500<br>만원<br>전문(저명)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,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<br>① 국제 - 저명 갤러리, 화랑, 미술관<br>② 서울 - 저명 갤러리, 화랑, 미술관<br>③ 지방 - 저명미술관급 이상<br>(문화회관, 예술회관, 미술관)<br>국내전문급<br>300<br>만원<br>지방 갤러리, 화랑의 개인전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.<br>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.<br>③ 〈삭제 2018-01-17〉<br>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<br>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,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.<br>⑥ 〈삭제〉 〈개정 2016-03-01〉<br>⑦ 저서부문(역서) 연구비 지원 범위〈개정 2016-03-01〉<br>1.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<br>2.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(전공분야의 학술저서)이며 머리말, 각주,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)<br>3.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<br>4.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.<br>5.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<br>6.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(교과부 규정)<br>7. 실험, 실습서 50% 인정<br>8.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<br>-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) 초급, 중급...<br>-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<br>-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<br>-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| 체육 분야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미술디자인 분야<br>교내공모과제<br>국제전문급<br>1000<br>만원<br>디자인, 회화, 공예, 멀티미디어, 영상 등<br>저명 국제 비엔날레, 트리엔날레의 개인전(해외저명단체의 위촉,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)<br>1.자기전공원칙(최종학위 취득분야./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,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)<br>2.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3. 삭제<br>4. 저명 미술단체기준(사단법인, 저명, 대규모)<br>5.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(신작50%이상)<br>6.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<br>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.<br>7.발표회 사전공지원칙 : 관리기관(행정부서:연구진흥실)<br>8.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,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.<br>9.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10.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<br>국내저명급<br>500<br>만원<br>전문(저명)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,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<br>① 국제 - 저명 갤러리, 화랑, 미술관<br>② 서울 - 저명 갤러리, 화랑, 미술관<br>③ 지방 - 저명미술관급 이상<br>(문화회관, 예술회관, 미술관)<br>국내전문급<br>300<br>만원<br>지방 갤러리, 화랑의 개인전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〈삭제〉〈개정 2017-01-24〉<br>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.<br>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.<br>③ 〈삭제 2018-01-17〉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9. 〈삭제〉 〈개정 2016-03-01〉<br>10. 재판, 개정판 인정안함. 〈개정 2016-03-01〉<br>11. 〈삭제 2019-02-25〉<br>12. 〈삭제 2020-12-21〉<br>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. 〈개정 2017-01-24〉 |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<br>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,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.<br>⑥ 〈삭제〉 〈개정 2016-03-01〉<br>⑦ 저서부문(역서) 연구비 지원 범위〈개정 2016-03-01〉<br>1.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<br>2.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(전공분야의 학술저서)이며 머리말, 각주,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)<br>3.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<br>4.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.<br>5.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<br>6.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(교과부 규정)<br>7. 실험, 실습서 50% 인정<br>8.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<br>-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) 초급, 중급...<br>-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<br>-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<br>-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<br>9. 〈삭제〉 〈개정 2016-03-01〉<br>10. 재판, 개정판 인정안함. 〈개정 2016-03-01〉<br>11. 〈삭제 2019-02-25〉<br>12. 저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각 장(chapter)별 해당저자 기록되거나 출판사의 저자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<br>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. 〈개정 2017-01-24〉 |